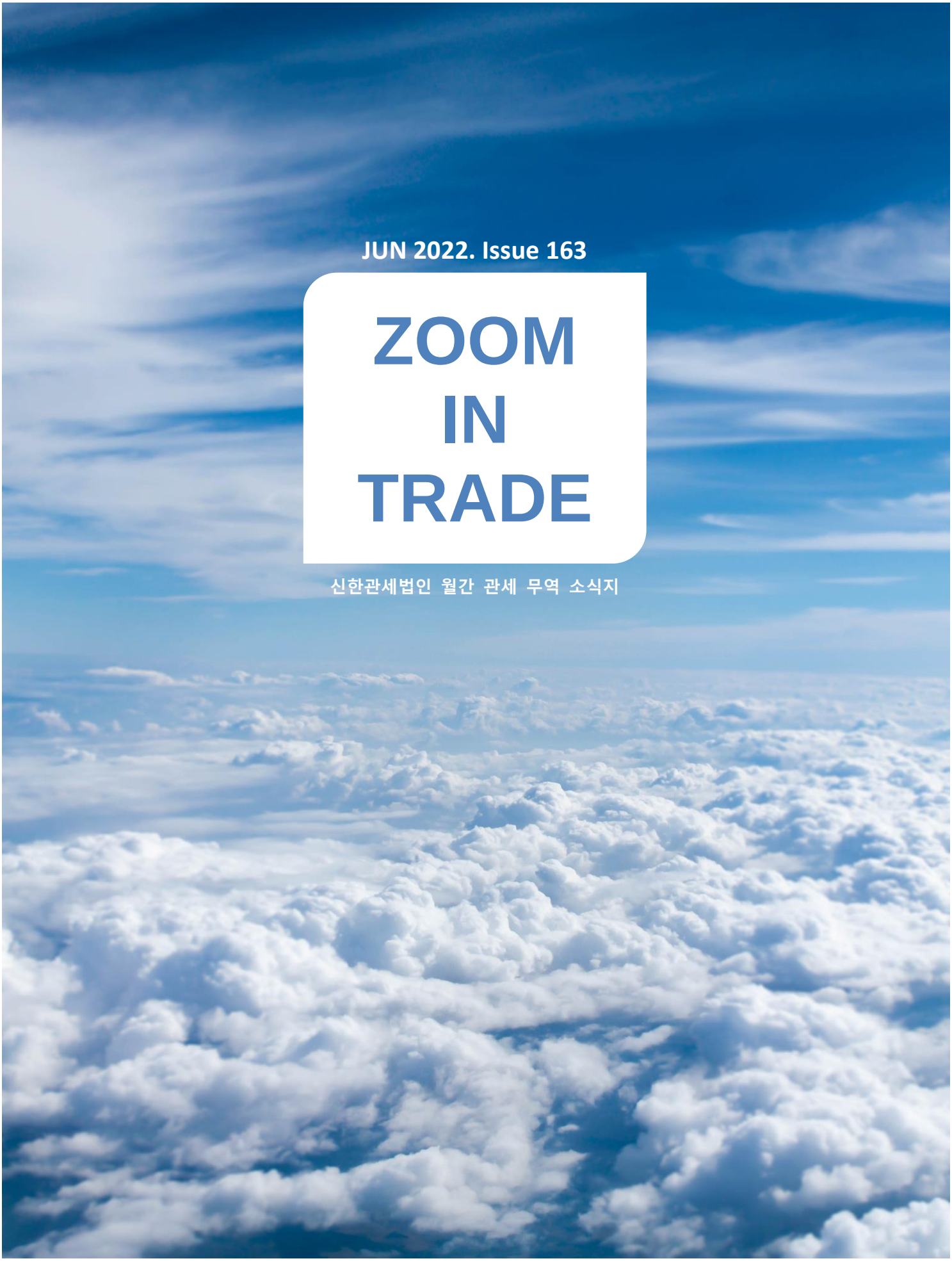

JUN 2022. Issue 163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가슴샘을 아시나요?

The New Customs Study

06 …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수출입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30개 제도개선 과제발굴 도전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0 …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55 (2021.12.29)

논리로 푸는 HS 사례

13 … 논리로 푸는 HS 사례 - 리튬인산철전지

Global Customs Insight

17 … 베트남 내 기업이 제조, 생산을 위하여 해외 고객, EPE등으로부터 금형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출입 신고, 면세여부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0 … RCEP 활용 수출입 실무 처리를 위한 확인 사항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 용에 관한 규정

Where Is Grace Chang?

가슴샘을 아시나요?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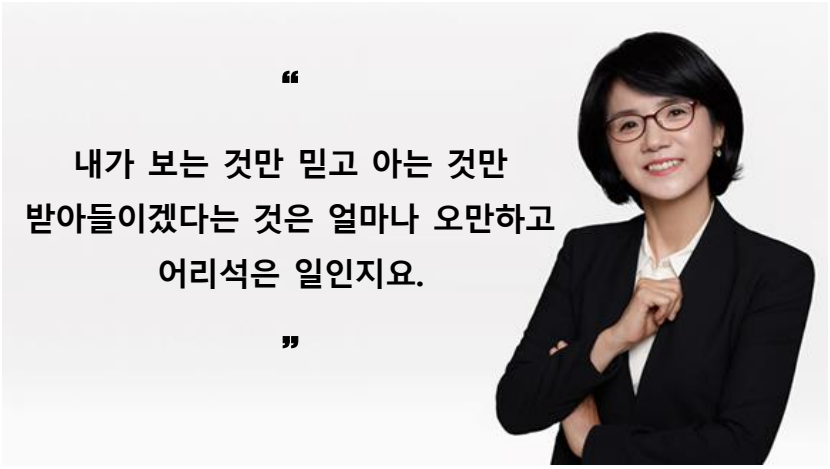

가슴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슴샘은 우리의 가슴 정 중앙에 있습니다. 갈비뼈가 연결된 가슴뼈 뒤, 심장의 바로 앞에 자리합니다. 흉선이라고도 불리지요. 나비처럼 좌우 둘로 나뉜 평평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으며 아주 작고 가볍다고 합니다. 출생 시에는 10g 정도의 부드러운 조직이나 성장하며 25~35g 정도까지 커집니다. 특이하게도 사람의 사춘기인 13~16 세 경에 크기와 기능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이후에는 점점 수축하고 지방조직화 되며 기능도 거의 사라집니다.

가슴샘은 림프계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들과 달리 일평생 기능하지 않으나 활성상태일 때에는 면역체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백혈구의 한 종류인 T 림프구를 성숙시키는 일을 합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미성숙 림프세포는 가슴샘(Thymus)으로 이동하여 성숙과정을 거칩니다. T 림프구(T 세포)로 되는 것입니다. T 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가슴샘은 내분기기관중의 하나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가슴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T 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 면역체계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면역 및 호르몬 치료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슴샘은 페르가몸의 갈렌(Galen of Pergamum, 서기 130 년~200 년)이 “organ of mystery”라고 기술한 이래 2000 년의 의학 역사에 "신비의 기관"으로 남아 있었다 합니다. 인체 내에서 사춘기까지 성장한 가슴샘은 이후 그 기능과 크기가 축소됩니다. 성인 특히 노년기에는 그저 작은 지방덩어리가 되며 기능도 소멸됩니다. 오랜 기간 의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The New Customs Study는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수출입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30개 제도개선 과제발굴 도전'**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 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55 (2021.12.29)'**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논리로 푸는 HS 사례 (리튬인산철전지)'**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베트남 내 기업이 제조, 생산을 위하여 해외 고객, EPE등으로부터 금형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출입 신고, 면세여부'** 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RCEP 활용 수출입 실무 처리를 위한 확인 사항'**,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입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요한복음 20:29)
'가슴샘'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최근입니다. 가슴샘? 내 가슴속에 샘이 있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의 기관이 내 가슴에 있는데 모르고 있었네...?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생소한 용어들을 따라가며 보이지 않는 신비한 가슴샘과 가까워졌습니다.

오래 전 한동안 자가면역질환을 앓았습니다. 신체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임무를 띠고 있는 백혈구가 내 몸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을 비롯한 몸의 곳곳에 염증이 생기며 통증이 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증세에 영문을 몰라 당황 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 의지로 컨트롤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지요. 백과사전의 인체도를 보며 상상한 이미지였습니다.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암세포가 왜 생겨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소멸하는지, 암세포를 공격하고 없애는 역할의 백혈구가 어찌하여 내 몸을 공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고생 끝에 치유(?)되었으나 여러 가지 노력 중 어떤 시도가 효과를 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가면역을 담당하는 가슴샘과 그곳에서 성숙한 T세포 존재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으나 듣게 되고 읽다 보니 그 존재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수일까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지요? 내가 보는 것만 믿고 아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인지요.

내 안의 가슴샘을 들여다 봅니다. 잿빛의 지방덩어리로 쪼그라진 가슴샘을 생각해 봅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한 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가슴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만져지는 내 몸도 잘 모르면서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내 생각을 잘 알고 있다 자만한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생각을 붙잡지도 못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 건방짐을 가슴샘 안으로 붙들어 넣습니다. 계속해서...

소란한 세상입니다.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obert M, Sargis, MD, An Overview of Thymus, Jan 18, 2022, @endocrineweb newsletter,
https://www.endocrineweb.com/endocrinology/overview-thymus
**RSNA (Radi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2006 *https://pubs.rsna.org/doi/full/10.1148/rg.262045213*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The New Customs Study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수출입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30개 제도개선 과제발굴 도전

현재의 수입물가상승과 수출증가세 둔화는 무역기업에 큰 부담

5.31일 마트에서 보니 포도씨유 900ml 값이 13,900원으로 2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수입물가의 상승과 교역조건의 악화로 2022년에도 기업과 가계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보다 더한 세상이 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가는 역사적인 오일쇼크 상황으로 올랐고 연쇄적으로 석탄, 가스 등 다른 에너지도 함께 오르는 상황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며, 전기, 시멘트, 철강가격까지 올라 국내 설비투자나 건축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 영 진
전무이사/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해상운임 폭등과 반도체 품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22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합니다. 22년 4월 수입물량은 기계 및 장비와 제1차 금속제품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5.2% 하락했으나, 광산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올라 전년동월대비 19.4%가 증가하였으니 수입물가가 단순 계산해도 25%이상 인상된 것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22년 4월 수출물량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수출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하여 수입가격지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출기업과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단순히 보아도 수출기업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내 수입기업과 내수기업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겠습니다.

개도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세와 내국세 증세 노려

2019년 12월말에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로 22년 4월말에 처음 베트남출장을 가보니 동남아 국가들은 일상회복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방역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동안 생산위주 국가에서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는 사이에 원재료 수급차질과 실업의 증가, 재정악화 등으로 코로나 방역예산부족을 겪었는가 하면,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의 투입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우리 생산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는 활발한 경제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과 유권해석,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제까지 제공했던 세금감면이나 혜택을 축소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금추징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부품 등 몇몇 산업에서 이들 국가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기업을 대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추경, 손실보전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확대가능성 증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금전지원을 바로 뿌리는 것이 표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여야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선 바 있고, 5월에 통과된 추경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62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경은 물가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예산조정과 초과세수를 이용한다고 하니 결국 기업과 가계에 세금추징을 위해 세무조사와 관세조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동안 세무조사와 관세조사가 유예된 약 60%의 기업부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율 쟁점 발생가능성이 특히 높다

22년 5월초 한국 관세청의 출자법인의 자회사인 KCNET(주)은 세계관세기구(WCO)에 HS코드 비교시스템을 공급하여 현재 각 국가의 HS CODE 신고상황과 비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와 기업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샘플로 테스트를 해 보니 같은 품목이라도 HS단위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각국의 세관과 기업간의 HS분류 쟁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HS쟁점이지 지속적으로 통관이나 통관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물품뿐 아니라 수출물품도 HS분류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HS비교시스템은 품명만 입력하면 HS코드를 누구나 쉽게 포착할 수 있어서 HS전문성이 낮은 공무원도 일단 쉽게 추징을 하려 들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낭비적 요소를 줄이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관세와 무역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수출입기업과 관세, 무역당국의 역할입니다.
특히 관세와 통관업무는 실제 물품이 이동하는 업무이므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 운송료와 보관료, 인건비가 등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과 유통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최근 경유가격의 인상으로 화물운송기업과 운전기사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장거리 운송을 할 수 있는 화물차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과 용역제공기업에서는 비용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세관과 무역당국도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는 도로교통이 원활한 새벽이나 야간시간을 이용해야 유류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야간 통관 등 신속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재권침해물품이나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큰 품목은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일선세관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기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30대 과제발굴에 도전

22년 5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세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모든 것은 기업과 전문가의 제안에 의해 개선되어야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관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관세와 무역과 관련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통관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올해 연말까지 30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무역협회, 전경련 등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기간 동안에도 방역과 백신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여러 건의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출입통관, 관세조사, AEO, ACVA, 관세환급, 외환, FTA검증, 관세제도 등 전분야에 대해 마음껏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010 2752 8298 서영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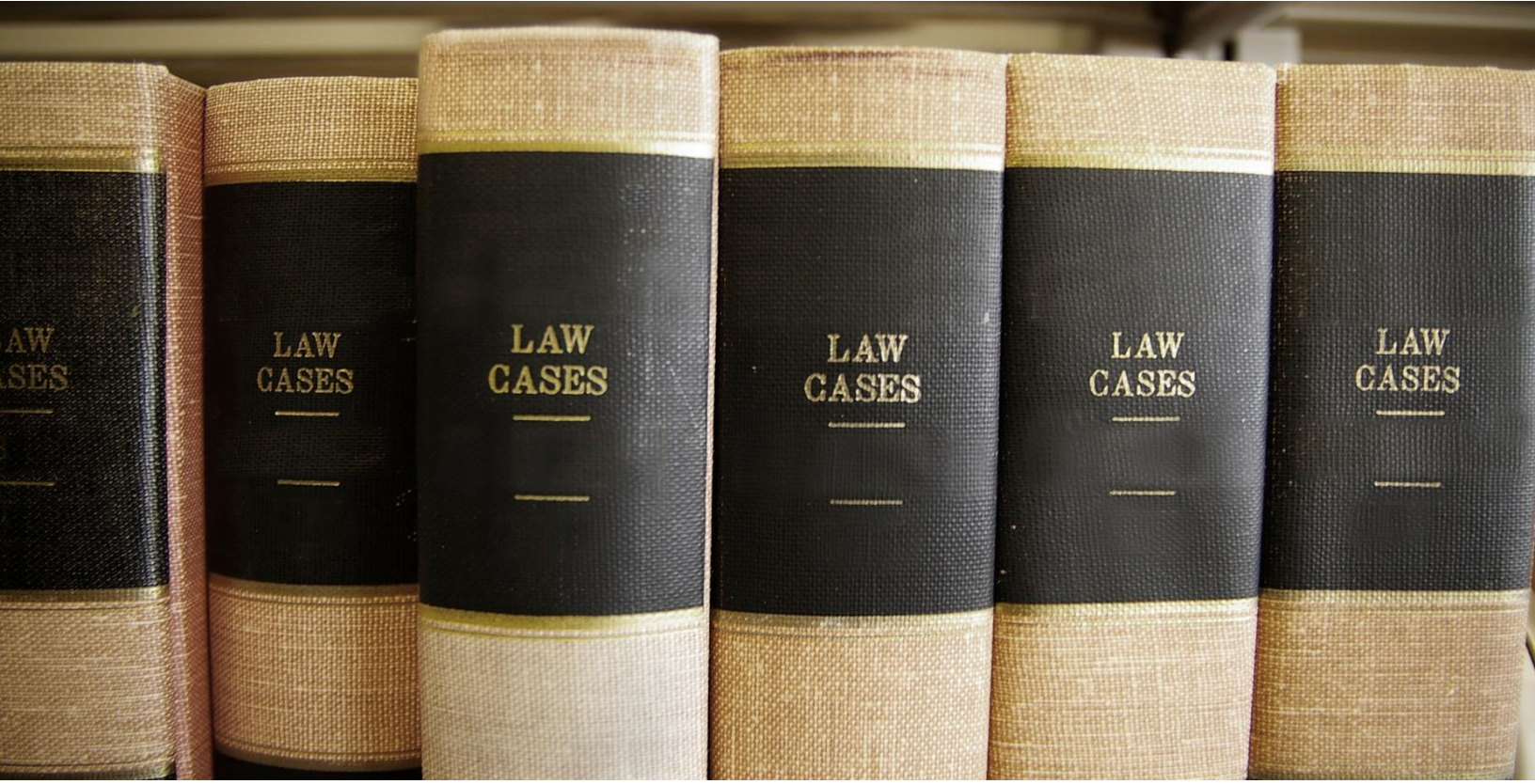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55 (2021.12.29)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냉동삼치를 냉동삼치피레트로 가공하기 위하여 냉동삼치를 임가공업체에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품목번호를 HSK 제0303.59-1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임가공업체로부터 위 냉동삼치를 사용하여 가공한 냉동삼치 피레트(fille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HSK 제0304.89-9000호(관세율 10%)로 하여 신고하는 한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따라 냉동삼치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지 원
관세사
jwn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FTA컨설팅
- 품목분류

-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과 수출물품인 냉동삼치의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과 쟁점물품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2. 판단

(1)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출한 냉동삼치와 이를 가공한 후 수입한 쟁점물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출입신고서, 임가공계약서, 위생증명원, 가공작업일지, 제품사진 등을 바탕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쟁점물품은 제3류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어류의 단순가공방법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듯이 가공전이나 가공후에도 본질적인 재질과 성분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물품이고, 삼치를 가로로 슬라이싱(slicing)하여 피레트(fillet)로 가공하여 10단위 품목번호만 변경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가공에 사용된 냉동삼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입시 물품간 동일성을 입증하는 서류(수입면장, 임가공업체의 가공일지, 세관 검사검역 수의학인증서, 수출면장 등)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쟁점물품과 각각의 서류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쟁점물품은 원재료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을 가한 가공이고, 수출입시 우리나라 세관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일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입 검사가 이루어졌더라도 농·수산물의 경우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어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3. 결론

쟁점물품은 무상수출한 냉동삼치를 원재료로 하여 임가공업체에서 머리・뼈・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여 피레트(fillet)로 가공한 후 이를 냉동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냉동삼치의 수출시 품목번호는 HSK 제0303.59-1000호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시 품목번호는 HSK 제0304.89-9000호로 수출시와 수입시의 품목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수출물품은 10단위의 품목번호가 다른 점, 위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시사점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제2호에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거친 후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품목분류 10단위 일치 여부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 리튬인산철전지

1. 개요

2차 전지는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전기화학 셀로 구성된 배터리이다. 2차 전지는 배전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해 연결된 버튼 셀에서 메가와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생산되며 납산(lead acid), 니켈 카드뮴(NiCd), 니켈 수소(NiMH), 리튬 이온(Li-ion), 리튬 이온 폴리머(Li-ion polymer) 등 여러 가지 전극 재료와 전해질의 조합이 사용된다.

손 성 곤
지사장/관세사
skso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 관세환급 컨설팅

특히, 최근 2차 전지의 용량과 폭발 위험성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양극재 등 구성성분의 조합 및 비율을 다양하게 함에 따라2차 전지 HS CODE 분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높아졌다.

2차전지는 크게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로 분류된다. 현재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가동된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으로 구성된다. 양극재를 니켈·코발트·망간 등 세 가지 물질을 섞어 만들면 삼원계 배터리(NCM), 리튬인산철로 만들면 LFP 배터리로 불린다.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메르세데스벤츠도 "2024년부터 소형, 준중형 전기차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며,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 역시LFP 배터리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FP 배터리셀, 모듈, 팩의 수출입 비중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논리로 푸는 HS 사례에서는 LFP 배터리 즉, 리튬인산철전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2019년) 및 2022년 HS 개정 특징을 통해 HS 분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제품>
- 품명 : 리튬인산철전지(LiFePO4)/모델:SE60AHA
- 물품설명 : 1) 축전지의 양극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에 리튬인산철(LiFePO4)를 사용하여,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단점인 충방전 횟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내구성 열화에 강하여 폭발 및 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산업용 장비, 캠핑카, 전동 오토바이, 골프카트 등 다양한 용도의 이차전지로 사용
  3) 전해질이 액체임.
- 규격 : 142mm×50mm×217mm(L×W×H)

2. 품목분류의 검토

1) 고려 대상 HS CODE
LFP 배터리가 분류될 수 있는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HS 분류 기준>

HS	8507.80-0000	8507.60-1000	8507.60-9000
세율	기본세율: 8% 한-중국FTA협정세율: 0%	기본세율: 8% 한-중국FTA협정세율: 0%	기본세율:8% 한-중국FTA협정세율: 0%
호의 용어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소호의 용어	그 밖의 축전지	리튬폴리머 축전지	그 밖의 리튬이온축전지

2) 품목분류 검토

리튬이온축전지(HS 8507.60-9000)와 리튬폴리머 축전지(HS 8507.60-1000) 품목분류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전해질이 액체인지 고분자 겔(폴리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튬폴리머전지는 양극, 전해질,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분리막과 리튬이온의 전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고분자 겔(폴리머)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하기에 해당 분류 대상 제품(전해질이 액체임)은 그 밖의 축전지(HS 8507.80-0000)와 그 밖의 리튬이온축전지(HS 8507.60-9000)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분류 대상 제품에 대해 기존에는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는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 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중략) ... 축전지의 주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2) 알칼리축전지 : 전해액은 보통,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리튬 또는 티오닐 클로라이드이며 전극은 다음의 예와 같다. (ⅰ) 니켈 또는 니켈혼합물 양극 및 철, 카드뮴 또는 메탈하이드라이드 음극 (ii) 산화리튬코발트양극 또는 흑연혼합물음극 (iii) 탄소양극 및 금속리튬 또는 리튬얼로이음극 (iv) 산화은양극 및 아연음극"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기존 리튬이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축전지 양극에 리튬인산철(LiFePO4)을 사용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예시한 리튬이온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축전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8507.80-9000호에 분류하였습니다.

*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46 / 2014.06.19.)

하지만, 2019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해당 분류 대상 제품에 대해 문헌상에서"리튬이온 축전지"는 2차 전지로, 음극의 리튬이온이 중간의 전해액을 지나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물품이라 정의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양극활물질로 리튬인산철(LiFePO4)을 사용하며 전해질이 액체 상태인 축전지로서, 충전될 때는 리튬이온(Li+)이 양극에서 빠져나와 전해질을 타고 음극으로 흐르며, 방전될 때에는 음극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가는 원리로 충·방전되는 축전지로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예시한 리튬이온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축전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8507.60-9000호에 분류하였습니다.

* (품목분류 변경고시 : 제2019-24호 / 2019.06.14.)

3) 변경고시 고려사항

이는 기존 품목분류 결정사항(품목분류3과-1446)에서는 2차전지 중 리튬이온축전지의 호해설 상 리튬이온의 범위를 (ⅰ) 니켈 또는 니켈혼합물 양극 및 철, 카드뮴 또는 메탈하이드라이드 음극 (ⅱ) 산화리튬코발트양극 또는 흑연혼합물음극 (iii) 탄소양극 및 금속리튬 또는 리튬얼로이음극 (iv) 산화은양극 및 아연음극 내에서 LFP 배터리를 비교 분류하여 결정하였으나, 2019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양극재 내 주 양극활물질로 리튬이 사용되고, 해당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환원(충전) 및 음극에서 리튬이온이 분리되어 전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산화(방전) 반응을 통해 전기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2차 전지의 원리 및 특징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양극활물질의 조합 및 비율이 다양하게 구현 되어 호해설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에 변경 고시를 통해 품목분류를 바로 잡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2022년 HS 개정

축전지(HS 8507호)에 대해 2022년 HS 개정이 되어 기존 리튬이온축전지(HS 8507.60)를 소재의 특징에 따라 리튬폴리머축전지(HS 8507.60-1000)와 그 밖의 리튬이온축전지(HS 8507.60-9000)로 분류하던 것을 축전지의 용도에 따라 전기차용(HS 8507.60-2000), 에너지저장장치용(ESS, HS 8507.60-3000) 및 그 밖의 용도(HS 8507.60-9000)로 분류함으로서, 리튬이온전지 품목분류에 있어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배경, 원리, 소재 등 고려사항을 파악함이 없이 용도에 의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의 위험이 줄어 든 효과가 있겠습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베트남 내 기업이 제조, 생산을 위하여 해외 고객, EPE등으로부터 금형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출입 신고, 면세여부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기업들의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금형이나 설비 등의 임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형 임대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문의와 issue 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베트남 세관총국 의견표명(Official Letter)가 있어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유의하셔야 할 점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신 종 호
법인장/관세사
jhshin@shcs.kr

[PROFILE]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 관세환급
- 기업심사

1. 베트남의 FDI 기업 유형

베트남에서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EPE 등을 제외하면, 크게 2가지로 대별됩니다. 임가공의뢰자(Hirer)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재료를 받아서 의뢰대로 제조, 가공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가공비를 수령하는 "임가공(Processing)" 기업과 자체적으로 물품을 제조, 생산하여 고객에게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대를 받는 "일반생산(Manufacturing)"기업이 그 2가지 유형입니다. 이 Processing기업과 Manufacturing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원재료 인정범위, 법상 근거규정, 설비 등의 면세신고 가능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는데,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Manufacturing 기업의 생산지원을 위한 고객의 금형 임대, 수입신고 여부

만약, 고객기업(해외의 Buyer 또는 베트남 내 EPE기업)이 특정한 Manufacturing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원하는 사양 또는 성능의 물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 또는 금형 등을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설비나 금형 수입 시 Manufacturing 기업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가공의뢰자 – 임가공 수행자의 관계의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Official Letter를 통해 수입신고 시 세부적인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해외 또는 EPE등으로부터 금형, 설비 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의 조건이 유, 무상인지 관계없이(사실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번 Official Letter에서도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유형 및 과세가격 결정, 부가세

이때, 수입자인 Manufacturing 기업은 임대기간을 설정하여 수입신고 해야 하며, 사용해야 할 수CD Type은 G12 유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이때, 수입관,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 수입관세 : [임대를 위해 실제 지불되는 비용(임대비) + 물품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 관세율

** 물품 가격이 과세가격이 아니고, 임대비가 과세가격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관에서 임대비가 실제로 "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해서 과세가격을 운송비용으로만 계산하도록 인정해 줄 것 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용 시 지역마다 인정여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추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비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종료 후 금형이 재수출될 때에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번 Official Letter에 포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금형가격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계산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하면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역세관들도 있었으나, 앞으로 점차 업무처리방식이 임대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가세: 일시 수입 ↔ 재수출 될 물품의 경우 VAT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면세 설비, 금형 등 2차 임대 시 유의사항

한편 위의 내용과 연계하여, 면세 혜택을 받고 베트남에 반입한 금형, 설비 등을 다른 기업에 재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입 CD를 통해 이력관리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반입증 / 반출증 / 임대계약서 등은 필히 구비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세관 심사 시, 일반적인 면세원자재의 수책관리(Liquidation) 적정성뿐만 아니라 면세 받은 금형, 설비 등의 보유여부, 관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 면세 설비 등 반출로 적발되게 되면, 세관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벌금(Penalty) 및 금형 자체에 대한 면세 불인정,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면세 받고 들어온 모든 물품은 우리 회사 내에만 있어야 하며,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필히 수출입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처리는 상황마다 검토가 필요하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형 임대와 관련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법령이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각 지역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다른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시 제일 최신의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관련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애매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시면 전문가와 한번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RCEP 활용 수출입 실무 처리를 위한 확인 사항

1.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으며,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월 RCEP이 발효된 후 최근까지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이 공지된 바가 없었으나,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RCEP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이 관세청 공지되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 해당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 다 은
관세사
dechu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 관세환급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과 함께 공지된 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RCEP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것

②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가 없음

③ 해당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권고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④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것을 권고

2.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공지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일 것이 필수조건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RCEP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국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에 대하여 2022년 5월 2일 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 관세청에 아래와 같이 공지되었으며, 수입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적합성 검토 시 공식적인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관세청공지, 2022. 5. 6.]

('22. 5. 2. 현재)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일본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 (예시) 0412342204
중국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총 9자리
태국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호주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인도네시아 (미발효)	일(2자리) + 월(2자리) + 년(2자리) + 연번(6자리) + 보안(1자리)

※ 상기 표는 RCEP 사무국에서 회람('22.5.2.)한 "RCEP 협정국별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됨

3.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발급 업무 집행 지침 제정·시행

관세청은 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을 '22.5.18. 부터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의 경우 지금까지 별도의 지침 없이 운영되었으며, 관세청은 본 지침 제정을 통하여 RCEP과 한-아세안 FTA의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유의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하여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하여 발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 및 자동심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공지한 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stablished 1985 신한관세법인 SHINHAN Customs Service Inc.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료원료인 겉보리와 밀기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각각 '40,000톤'에서 '250,000톤',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칩용 감자'에 대해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한 승 헌
관세사
shha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품목분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 판'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내용

*칩용 감자의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0%의 할당관세 적용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1003.90	겉보리	사료용	0%	250,000 톤
2302.30	밀기울	밀에서 나온 것	0%	60,000 톤
0701.90	감자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칩용	0%	12,810 톤
2804.29	네온, 크립톤, 크세논		0%	수입전량
7601.20	알루미늄의 괴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얼로이	0%	수입전량
7606.11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립으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0%	수입전량

*네온, 크립톤, 크세논, 알루미늄의 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의 인하 적용

3. 의견

최근 우크리아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곡물, 원자재 등 주요자원에 대한 공급망 위기와 가격폭등이 나타남에 따라 그에 따른 연쇄작용이 기업과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출입 기업들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세사 등 무역전문가를 통해 위에서 소개한 할당관세 적용 등의 제도를 알고, 이를 고려하여 추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www.ftagateway.co.kr
www.customsservice.co.kr

통권 163호 | 발행일 2022년 6월 28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승훈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6
Tel 02-3448-1181 Fax 02-540-2323